이슈페이퍼 22-21-⑭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이슈 분석

서 창 배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이슈페이퍼 22-21-⑭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이슈 분석

서 창 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부설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SUMMARY

□ NFT 및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블록체인기술의 발달과 함께 NFT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음. 또한 NFT로 발행된 디지털 파일은 각종 메타버스 플랫폼을 무대로 재생산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현실경제와도 연결되고 있음

□ NFT가 소유권에 관한 기록을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능을 근거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그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미 NFT를 교환 ·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거래소)에서의 계약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그 이외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운용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초가상현실세계 관련 산업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NFT의 산업적 활용도를 무궁무진하게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NFT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신뢰를 확보해줄 법적 장치들이 필수적이며, NFT가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법적 정의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거래의 형태에 따라 혹은 각각의 기능을 고려한 법적 취급이 필요함

□ 그 활용도 혹은 기능에 따라 암호자산으로서의 NFT, 권리화된 NFT, 가상 물품 NFT, 실물 연계

형 NFT 등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게임아이템,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또한 수집품(Collectibles), 미술품(Art), 게임(Gaming), 유틸리티(Utilities), 메타버스(Metaverses) 등으로 분류되기도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기능이 혼합된 NFT가 발행되고 있어 오히려 각각의 효용에 맞는 개별적인 법적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송미술관의 문화재 매각과 관련하여 NFT가 이슈화 되었으며 그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NFT 관련 법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NFT 아트라 불리는 유형 즉 실물을 디지털화(化)하여 발행한 수집형 NFT 등의 경우 NFT와 연동된 재산의 성격상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NFT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문화재 경매에 참여하려 했던 국보DAO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 중 주요 원인으로 현행 법제가 NFT의 금융수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큰 한계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음

□ 최근의 가상재화 가치 및 거래량의 급격한 하락세,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NFT를 제도권 내로 포섭시켜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규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전제에서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 방식을 유연하게 현실화해야 하며, 이미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의 부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NFT 유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이슈 분석

Ⅰ. 연구의 배경 07

Ⅱ. NFT의 의미와 거래 현황 09
1. NFT의 개념과 특징 09
2. NFT 발행 및 거래 시장의 현황 10

Ⅲ. 금융투자 기능 NFT 규제 현황 15
1. 주요국의 NFT 정책 동향 15
2. 우리나라의 NFT규제 현황 16

Ⅳ.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쟁점 개선방안 21
1. NFT 거래와 관련한 현행 법률 적용의 문제점 21
2. NFT의 기능 확장과 법적 문제점 23
3. NFT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26

Ⅴ. NFT에 대한 규제의 개선 방향 제언 29

참고문헌 31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이슈 분석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Ⅰ.
연구의 배경

□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하 NFT라 한다)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그 거래량과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 NFT가 소유권에 관한 기록을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능을 근거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음

○ 이는 코로나 19 펜데믹의 상황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2021년 이후로 NFT라는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성을 보였던 측면도 있음

□ 최근인 2022년도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NFT의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소강상태를 보이다 현재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3월까지만 해도 일 평균 거래량 11만 8천 건, 거래대금 7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22년 5월에 일 평균 거래량이 4만 건, 거래대금이 8천 4백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1년 9월 거래량(18만 건) 대비 77% 감소된 것으로 집계됨[1]

○ 그러나 이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전체 가상재화 가치의 하락세와 더불어 일종의 투자 거품이 꺼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투자 문화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의견도 많은 것으로 보임

1 김도현, "[이슈분석 219호] NFT 최근 상업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l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1015&menuNo=200046&pageIndex=1(최종 검색일: 2022.11.03).

□ NFT가 현실 세계의 '권리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자산 고유의 내재가치 및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나만의 사진/영상, 미술품, 부동산,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NFT를 부여하여 유일성을 확보하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거래소에서 유통됨으로써 그 활용도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음

○ NFT 산업이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생태계로 볼 수 있으며 초기의 게임, 미술품 등 NFT 기반 컨텐츠 발행과 수집의 수준에서 형성되던 산업의 모습에서 NFT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 개발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 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NFT 시장 데이터 사이트 등 다양한 분야로 형성되고 있음

○ NFT 거래의 기본 개념은 NFT에 연결된 콘텐츠가 거래된 경우, 일단 판매된 NFT에 대해 기존의 판매자(舊소유자)가 더이상 통제할 수 없고 구매자(新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해당 NFT가 가지는 콘텐츠의 가치를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당 개념을 통해 최근에는 금융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인 2022년 10월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윤창현 의원안")」 이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NFT도 디지털 자산 정의에 포함하고 있음

○ 현재까지 NFT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법령을 통한 해석만으로는 NFT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초가상현실을 이용한 산업의 도래가 예상되며 그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NFT의 산업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NFT의 기능에 따른 개별화된 규율 방안이 필요함. 그 결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짐

Ⅱ.
NFT의 의미와 거래 현황

1. NFT의 개념과 특징

□ NFT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고유 ID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하며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게임 아이템 등등의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디지털 토큰을 의미함

○ NFT는 각각이 고유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지니며 그 결과 '원본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NFT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 대체불가능한 원본성 보장의 기능은 NFT 활용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NFT의 다양한 발행과 쓰임을 일의적으로 법적 규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NFT가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적 정의 또한 가상자산, 수집품, 금융자산 등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형태에 따라 혹은 각각의 활용도에 따라 법적으로도 구별되어 취급되어야 함

□ NFT의 기능에 따른 구별을 시도하자면 대체로 암호자산으로서의 NFT, 권리화된 NFT, 가상 물품 NFT, 실물 연계형 NFT 등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게임아이템,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또한 수집품(Collectibles), 미술품(Art), 게임(Gaming), 유틸리티(Utilities), 메타버스(Metaverses) 등으로 분류되기도 함

○ NFT는 기본적으로 암호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종류로 게임 NFT, 디지털

예술작품 NFT의 일부, 그리고 특정 자산의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NFT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이 더욱 성장하게 되면 NFT는 금융사의 디지털 자산 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 결과 NFT를 이용한 디지털 자산 담보대출, 자산의 디지털 유동화, NFT거래소,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서비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이를 권리화된 NFT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증권형 NFT를 들 수 있음

○ 가상 물품 NFT란 가상 세계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가상 물품을 NFT화(化)한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가상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표식이나 물건과 연동된 NFT를 의미함

○ 실물 연계형 NFT란 NFT화된 예술품, NFT화된 수집품 정도에서 최근에는 NFT 구입자에게 실제 상품을 지급하는 식으로 NFT를 실제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물건과 연동시킨 것을 의미함. 대표적으로 NFT 아트, 최근 LG 생활건강이 발매한 닥터그루트 유니버스 NFT, 각종 명품들과 연계된 NFT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들은 편의상의 구분이며 실제로는 여러 기능이 혼합된 NFT가 발행되고 있어 뚜렷한 개념적 차별성은 사실상 찾기가 어려우며 기능에 따른 개별적인 법적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2. NFT 발행 및 거래 시장의 현황

□ NFT는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통해 발행되는 가상 자산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거래량을 보이는 NFT 코인을 중심으로 개별 목록을 살펴 보면 쎄타토큰(비디오 전송 네트워크 NFT), 쎄타퓨엘(스트리밍 보상 NFT), 테조스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NFT), 칠지즈(스포츠 관련 NFT), 디센트럴랜드(가상 현실 부동산 NFT), 엔진코인(게임관련 NFT), 샌드 박스(게임 속 가상공간 구매 화폐 NFT), 메타디움(신원증명 NFT) 등을 들 수 있음

○ NFT가 거래되는 플랫폼의 경우 개별적인 거래 마켓 플레이스는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황임. 그 중 대규모의 마켓 플레이스는 해외의 경우 OpenSea, Rarible, LooksRare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ParaSquare, Ball MarketPlace, DOSI, TopPort, 업비트 NFT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모든 마켓 플레이스에서 NFT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Aggregator가 영업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Genie, Gem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음

□ NFT 시장의 최근의 급성장세는 특히 2021년에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임. 즉 21년 NFT 시장은 거래대금 약 248억 달러(약 31조 7,300억 원)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0년에 약 94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NFT 거래대금이 21년 들어 약 248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약 262배 성장을 보임. 특히, 21년 3분기에 거래대금이 약 107억 달러에 도달하며 이전 분기 대비 약 8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거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자면 게임(55.1%), 수집품(36.5%), 유틸리티(4.3%), 미술품(3.4%), 메타버스(0.5%) 기타(0.2%) 순이며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수집품(76%), 미술품(9%), 게임(7%), 메타버스(2%), 유틸리티(4%) 기타(2%) 순으로 분석됨

○ 그러나 최근인 2022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긴축과 금리인상 단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인플레이션 등의 각종 악재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의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음

- NFT 평균 판매 가격도 22년 5월에 일 평균 거래량이 4만 건, 거래대금이 8천 4백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1년 9월 거래량(18만 건) 대비 77% 감소되었으며 인기 NFT 상품들로 각광받던 여러 작품들의 가격도 매달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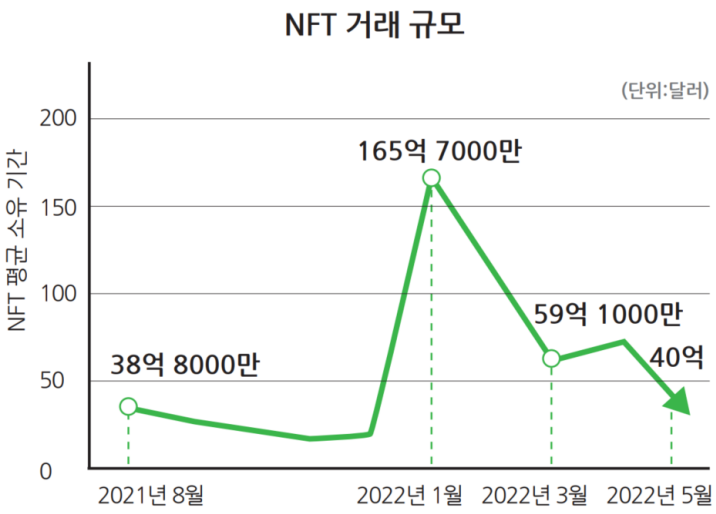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20/114006781/1(최종 검색일: 2022.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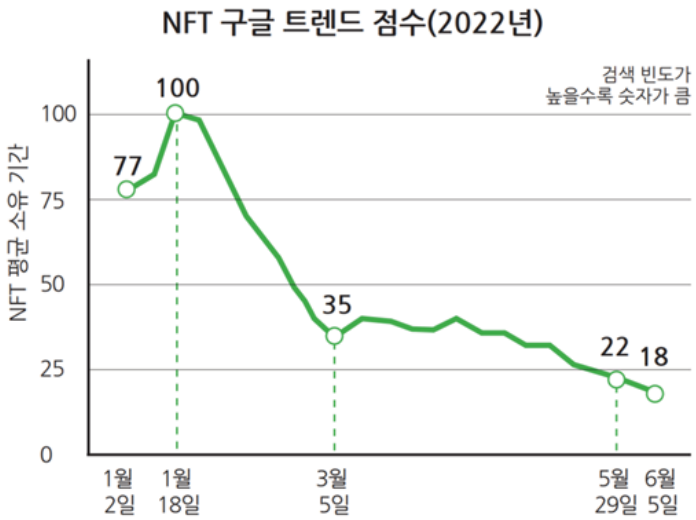

출처: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geo=KR&q=nft(최종 검색일: 2022.11.08)

□ 이미 전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NFT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새로운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갑작스런 하락세의 분위기를 근거로 섣부른 비관론은 의미가 없어 보임. 무엇보다도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초몰입형 가상세계가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NFT의 산업적 활용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활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NFT 자체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지금은 금융시장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이슈 분석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Ⅲ.
금융투자 기능 NFT 규제 현황

1. 주요국의 NFT 정책 동향

□ 가상자산의 범위에 NFT를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관해 각국의 태도는 대체로 유보적이며 신중한 입장으로 보임

○ 그동안 NFT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미국의 경우 2021년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NFT 금융상품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그 이후 탈중앙화 금융인 BlockFi에 2022년 2월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22년 3월에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가상자산 혁신에 걸맞는 규제 정비’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SEC는 NFT에 대한 규제 연구에서 투자자 보호 정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임

○ EU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15일에 유럽의회가 ‘가상자산 규제안(Markets in Crypto Assets, 이하 “MiCA”)’을 의결하였으며 특히 MiCA의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은 ‘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음. 이 규정으로 인해 NFT가 넓은 의미에서 규제 대상 암호화 자산에 속할 가능성은 있으나 MiCA 제2조에서 발행인을 법인에 한정하고 있어 NFT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영국의 경우는 22년 4월에 재무장관이 조폐국에 자체 NFT 발행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미리 다져 경제적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일본에서는 NFT에 관하여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 내에서 가상자산이 가진 기능과 사용례에 맞추어 규제를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0년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BCA(Blockchain Contents Association)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회원에게 손실보상,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시세조종을 모니터링 및 방지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중요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2021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가상자산협회는 NFT에 대한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익배분이 있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지불수단 같이 경제적 기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선불지급수단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중국은 NFT에 대한 과도한 투기로 인해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자 NFT 금융화 및 증권화를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NFT 분야의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NFT와 유사한 다른 명칭의 토큰을 발행 및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자국의 NFT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NFT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NFT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객체로 파악하여 기본 법률의 적용을 통한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NFT규제 현황

(1) 우리나라에서의 NFT의 이슈화 및 문제점

□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어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재와 관련한 새로운 방식의 거래 시도가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NFT 활용에 관한 큰 이슈를 처음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음. 또한 문화재 NFT 거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NFT 관련 규제의 문제점들이 부각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2021년 7월에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Non Fungible Toke)로 100개 한정 제작 · 판매했으며 2022년 1월에는 국보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했던 국보 72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국보 73호 '금동삼존 불감'에 대하여 구매를 시도한 사례를 통해 NFT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음

출처 : 간송미술관 홈페이지(http://kansong.org/)　　출처 : https://ntdao.org/guide/mintingguide.html

□ 그 이후에도 간송미술관은 국보 제135호 신윤복의 '혜원전신첩'에 속한 30점의 작품에 기반한 NFT(4억 화소 이상) 발행을 시작으로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 프로젝트 계획을 2022년 5월 27일 공개하였음. 특히 이를 통해 혜원 NFT 발행을 시작으로 2차, 3차 창작물 제작으로 연결시켜 메타버스 내에서의 전시회까지 확장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출처 : 간송미술관 홈페이지 (http://kansong.org/)

○ 국보 매각 사례의 과정을 예로 들자면, 당시 매각을 시도한 자들은 국보 탈중앙화자율조직(Treasure DAO)을 만들어 경매에서 국보 2점을 낙찰받기 위한 최소목표 금액인 50억원을 모으기 위해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만든 메인넷 '클레이튼(Klaytn)'에서 모금 계약을 오픈하였으며 오직 가상자산 '클레이(KLAY)'로만 기금을 수령하면서 모금의 전 과정은 오픈소스에 의해 사전에 확인 가능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진행하였음. 특히 이를 통해 모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는 취지를 담은 NFT를 모금액에 따라 발행해 주었음

○ 그러나 원래 목표액의 절반 정도인 '클레이(KLAY)' 154만3500개(약 24억 1500만 원)를 모금하는데 그쳐 결과적으로 환불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이는 국보DAO 웹 페이지 내에서 클레이튼의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음. 또한 발행했던 당해 NFT는 당시 모금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소유권을 보장해주었음

○ 국보DAO의 경우 금번 국보 매각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로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NFT에 대한 국내 법제의 한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됨. 즉 현행 법제상으로는 가상자산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되어 투자자에게 지분과 같은 특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현행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부담이 있어 실제로 발행된 NFT의 증표로서의 제한된 역할이 투자 유인의 측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2) 현행 규제 방식

□ NFT의 규제 범위 및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임.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전문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특정 기능의 NFT의 경우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금융규제기관들의 의도가 보임

○ 통상적인 의미의 NFT, 즉 NFT화된 예술품 혹은 게임아이템과 같이 특정 대상물이 NFT화된 경우에는 이를 지적재산권의 범주로 파악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제 방식임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22년 5월에 가상자산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NFT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었음

○ 구체적 내용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NFT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이나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디지털자산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발행이나 거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NFT의 자산유동화 기능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 결국 규제 개선의 방향은 특정 NFT의 기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NFT의 성격에 따른 규제 방안의 차별화 방안에 관해 좀 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이슈 분석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Ⅳ.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1. NFT 거래와 관련한 현행 법률 적용의 문제점

(1) NFT 거래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가상자산 거래소(거래 플랫폼)를 운영하는 기업은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혹은 고액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하는 경우 6개월 내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NFT 거래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NFT 거래대금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가정산 방식 및 수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제28조)

□ NFT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여 NFT거래플랫폼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대한 무인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 NFT 거래소들은 이 외에도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게임 플레이를 하며 우연성이 존재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NFT화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경우 NFT

가 실제로 법정통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급 가능하다면, 일종의 재물로 보아 도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2) NFT 거래 당사자들의 측면

1) 「세법」상 문제와 형사법적 문제

□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NFT 거래와 관련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정 「소득세법」상에 의하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21조)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4조)

○ NFT를 구매하는 사람은 거주국 법률에 따라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서도 창작자는 토큰 발생에 따른 저작권료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금 적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

○ NFT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본다면 NFT의 매매 수익은 가상자산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잡소득으로 과세되며, NFT로 구입한 콘텐츠를 사용한 2차 창작은 거래 계약상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NFT는 탈중앙화 플랫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객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규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

2) NFT화된 재화와 지식재산권의 문제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NFT화된 작품을 작가가 직접 만든 경우는 원칙적으로 작가가 모든 권리를 가지며 매수인의 경우 당해 NFT 작품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해석됨

□ NFT의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통상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복제, 공연, 전시는 불가하다고 해석됨

□ 지금과 같이 NFT에 대한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의 상황에서 NFT화된 작품이 무한대로 복제되어 판매되고 구매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혹은 NFT화된 작품이 처음부터 위작이거나 정당한 저작

권자의 작품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통상의 지식재산법의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온라인 디지털 파일의 경우 작품 창작자가 파일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면 소유대상인 NFT의 '원본'이 소실될 우려는 언제든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등의 현행 법률로는 소유자의 손해와 창작자의 책임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음

3) 게임 아이템 거래의 특수한 문제

□ NFT화된 게임 아이템은 그 특성상(사용자의 블록체인지갑에 보관되는 형태) 게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보유 및 판매 등에 제약을 두기 어려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NFT화된 아이템을 도입한 게임들의 등급분류 신청이 사행성 조장과 경품 제공을 이유로 거부되고 있음

2. NFT의 기능 확장과 법적 문제점

(1) NFT 산업의 확장성

□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그림, 게임 내 아이템이나 토지 정도로 한정되어 시작된 NFT 시장은 스포츠 스타 카드, 디지털 패션 잡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오다가 최근에는 금융이나 지적재산권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연동되어 활용되려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내역 혹은 관련정보를 인증하려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부동산 및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화하여 유동화시키는 수단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며 투자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NFT 발행 방식이 주목 받고 있음

□ 무엇보다도,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초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은 곧 NFT 기능의 효용과 확장성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러한 이유에서 NFT에 대한 규제 방식은 향후 미래 산업의 발전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짐[2]

(2) 금융 수단으로서의 NFT 기능의 확장

□ 금융사가 NFT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디지털 자산 담보대출, 자산의 디지털 유동화, NFT 거래소,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금융 모델들이 개발되어 실제 판매되고 있음

○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씨티 그룹(Citigroup Inc.)은 디지털 자산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유에스뱅크(US Bank),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등의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NFT 관련 금융상품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NFT 관련 금융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었음

□ 시중 금융기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 중인 NFT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수탁 서비스이며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진출은 관련 기술 기업에 지분 투자하거나 합작회사를 구성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은행의 경우 2020년 11월에 가상자산 수탁업체 'KODA' 설립(합작) 및 NFT 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며 신한은행은 'KOAC' 지분투자 및 NFT 사업추진을 2021년 1월에,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체 'DiCustody'를 2021년 7월에 합작설립하고 NFT 기반 STO 사업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음[3]. 최근에는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 그룹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신한플러스 내에 그룹사가 발행한 NFT 중 고객이 보유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NFT 갤러리'를 공개한 바 있음

□ 현금유동화 방식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NFTfi는 NFT를 담보로 DeFi 기반의 P2P 담보대출서비스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금융서비스는 NFT를 담보로 화폐로 유동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2 우리나라의 경우는 NFT를 비롯한 메타버스 유관 기술은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개발과 발행,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NFT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확장에도 적극적인 상황임

3 https://newsroom.koscom.co.kr/29803(최종 검색일 : 2022.11.03).

□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 또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함. 이는 익명 참여를 통해 진입장벽이 없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며 NFT의 ICO가 완전 금지의 방식에서 허용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이 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2017년 9월 증권발행 형식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규제하여 가상자산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음

○ 2021년 12월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간의 입장을 선회하여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실제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국내 ICO를 허용할 것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최근 2022년 10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인이 윤창현 의원안을 발의했으며 그 내용으로 대체불가토큰(NFT)도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음

□ NFT의 가상자산성을 인정하고 ICO의 허용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도 볼 수 있음.[4] 이는 곧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를 피하는, 즉 기존 제도화된 거래소에서 유통되기 힘들었던 주식들이 투자증권성을 가지는 다양한 NFT의 형태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음

4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42803411(최종 검색일 : 2022.11.07).

3. NFT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1) NFT화된 재화에 대한 규제 개선

□ 미술품과 같이 실물을 디지털화(化)하여 발행한 수집형 NFT 발행과 거래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객체인 디지털 아트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일종의 접속 코드 혹은 온라인 접속 코드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을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전히 논란이 있음

□ 이에 반하여, 최근 데미안 허스트가 자신의 도트 시리즈 작품을 Currency Project라는 이름으로 NFT화 하여 판매하면서 1년 후 (2022년 7월 27일 이후에) 원본과 디지털 작품 중에 하나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폐기하기로 약정한 사례[5] 그리고 번트뱅크시(BuntBanksy) 이벤트를 통해 뱅크시의 Morons라는 작품을 NFT화 하여 판매한 뒤 원본을 불태운 사례[6]의 경우에는 실물이 사라진 경우 NFT화된 작품이 대체불가의 진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더하여 원본에 변형을 주어 새롭게 탄생한 부가형 NFT화된 예술품의 경우에는 과연 원작자와 변형자의 관계를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르면 유형적 자산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형하는 '민팅'의 과정을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 그래서 결국 소유권자에 의한 민팅의 과정은 복제권의 침해, 공중송신, 전시 행위 그리고 배포 행위로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

□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법리에 충실할 경우 현재의 NFT 산업의 발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음. 그런 이유에서 보다 현실에 맞는 「저작권법」의 운용이 필요함

---

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24553&memberNo=32913615(최종 검색일 : 2022.11.07).

6 https://www.chosun.com/culture-life/art-gallery/2021/03/12/JMQJMRWFI5DX7EYFQS3FQS6J 2 Q/(최종 검색일 : 2022.11.07).

○ 디지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연동된 객체의 특성과 가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오리지널성에 대한 보장, 즉 일종의 권위에서 찾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7] 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른 NFT의 진화라는 현실과 지적재산권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NFT를 디지털 오리지널로 간주하고 NFT를 동산으로 파악한다면 NFT와 연동된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전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 저작물과 달리 NFT화 되면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오리지널화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저작재산권자의 양도제한권(「저작권법」 제46조제3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8]

(2) 금융 투자 기능에 대한 규제의 개선

□ 현재로선 특정 NFT가 자금 모집과 수익 배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투자계약증권 혹은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되어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규제 즉 공시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그리고 집합투자업 인가 의무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식의 발행이 어려운 상황임

□ 최근 2022년 4월 20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하였으며[9] 또한 2020년 4월 28일에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10]하였음

○ 당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인 조각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혁신성과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임

○ 이는 조각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의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한 조치이면서 특히 가상자산 및 NFT 규제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발전으로 평가[11]됨

---

7 윤종수·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 제70권 제6호, 법조협회, 224면.

8 윤종수·표시영, 위의 논문, 234-236면.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4. 20., 1면.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8. 배포: https: //www.fsc.go.kr/no010101/7772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최종 검색일 : 2022.11.07).

11 송화윤, 앞의 글, 275면.

○ 당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실물,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6가지 유형)를 띠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의 증권성 선(先)점검 의무 및 금융위원회에 문의 ·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조각투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난 경우에도 독창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사업모델의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중요한 사항에 관해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해야 하며, 도산 시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 반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사업 대상이 되는 실물자산 · 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사업자 위험으로부터 단절시켜야 하며,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원장 관리 확인 체계를 갖추어야 함. 그리고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음

□ 이 이외에도 NFT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 분석해 반영했으며 해당 법안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12]

12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0253133B(최종 검색일 : 2022.11.08).

V.
NFT에 대한 규제의 개선 방향 제언

□ NFT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정립은 NFT화(化)된 자산의 파생 가능성 및 자산의 신뢰성을 강화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연동된 가상자산의 신뢰성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NFT는 그 기능과 연동된 재화의 성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의 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규제방식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간송미술관의 사례는 실물형 NFT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보호의 문제와 구매자보호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금융자산으로서 NFT가 활용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 법제와의 정합성 문제를 좀 더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의 가상자산 가치의 갑작스러운 하락세는 그 기능과 활용도보다는 투자 혹은 투기 수단으로 전용된 점과 무관하지 않음. 특히 최근의 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13] 가상자산과 연결되어 발행되는 NFT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배경에서 NFT 산업 규제의 방향은 현재로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 즉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 방식을 유연하게 현실화해야 하며 이미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의 부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NFT 유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13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5259979i(최종 검색일 : 2022.11.08).

□ 이러한 전제에서 최근의 뮤직카우 사태를 통해 만들어진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최근에 발의된 윤창현 의원안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실제 적용에 있어 목적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REFERENCES

1. 단행본

김일동, 『NFT는 처음입니다』, 세종, 2022.

이병욱, 『블록체인 해설서 –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하이퍼레저』, 에이콘출판주식회사, 2021.

황정훈 · 서용모 · 정승욱 · 양영식 · 홍진욱 · 송인방, 『미래사회 WITH 블록체인』, 박영사, 2020.

2. 논문

곽상빈,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지급결제학회지』. 제13권 2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21.

김별다미 · 최동배,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 68,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김보름 · 용호성, "NFT 미술시장의 주요 쟁점과 전망",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 8 No 3. September, 2021.

김성혜, "미술 작품의 상업적 가치와 형성 체계: 미술 시장을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No. 30, 한국미술이론학회, 2020.

김양지 · 최지훈, "가상자산과 NFT의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투자자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제13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현경, "NFT 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덕근, "NFT의 현황과 쟁점",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2-01호, 한국법학원, 2022.

송화윤, “NFT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증권형 및 가상자산형 NFT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22.

신석영, “메타버스의 핵심, NFT와 가상경제”, 『Emergig Tech & Biz』 (Vol. 3) 하나금융그룹, 2021.

윤종수 · 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 제70권 제6호, 법조협회, 2021.

임종욱,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 사이트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l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1015&menuNo=200046&pageIndex=1

http://marikim.net/product/detail.html?product_no=194&cate_no=52&display_group=1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04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84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93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2021032301618.html

https://hypebeast.com/2021/3/grimes-war-nymph-digital-art-nft-6-million-usd-sale

https://justcreative.com/types-of-nfts/

https://kansong.org/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24553&memberNo=32913615

https://news.nate.com/view/20220304n27649?mid=n0601

https://newsroom.koscom.co.kr/29803

https://onlineonly.christies.com/s/beeple-first-5000-days/beeple-b-1981-1/112924

https://verticalplatform.kr/archives/4447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9111202269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0001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1

https://www.chosun.com/culture-life/art-gallery/2021/03/12/JMQJMRWFI5DX7EYFQS3FQS6J 2 Q/

https://www.chosun.com/culture-life/art-gallery/2021/03/12/JMQJMRWFI5DX7EYFQS3FQS6J2Q/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2/02/23/JNGOEFR5PFH RZNF3YO63PAGBCE/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73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53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 html?idxno=434973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45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9366629117144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1213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3044746g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0253133B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42803411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957#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637#home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2/01/8834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 /2022/02/1701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1HHPU5Y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4T7TGZT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25
https://www.tokenpost.kr/event/54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3/09/executive-order-on-ensuring-responsible-development-of-digital-assets/
https://www.wired.com/story/metaverse-big-tech-land-grab-hype/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5147000005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4075900009
https://zdnet.co.kr/view/?no=20211221150533

이슈페이퍼 22-21-⑭

금융투자 기능 NFT의
법적 이슈 분석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325-80-4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매품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93360

9 791192 325804

ISBN 979-11-92325-80-4